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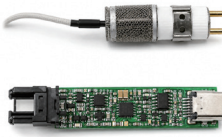
일회용 전자담배

I 사례 개요

- 사 례 번 호: NY N351229 (2025.07.24.)
- 쟁 점 사 항: 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 최종 수출국: 중국
- 최종 원산지: 인도네시아



II 사실관계

용도	• 흡연용	
재료	 인도네시아	• 가열 모듈 • 제어 모듈
	 중국	• 리튬 배터리 • 하우징 • 기타 부품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Sourcing ▾  인도네시아  가열 모듈 및 제어 모듈 생산 Manufacturing ▾  중국  STEP 1 가열 및 제어 모듈 수입 STEP 2 특수 브래킷으로 연결 STEP 3 리튬 배터리 납땜 STEP 4 최종 조립 STEP 5 테스트 및 포장 Export ▾  중국 최종 수출	
상세 공정	 인도네시아	• 히터 베이스, 세라믹 매트릭스, 직물 스트립으로 구성된 가열 모듈 생산 • PCBA, USB 인터페이스, 공기 흐름 제어장치로 구성된 제어 모듈 생산
	 중국	• 가열 모듈과 제어 모듈을 특수 브래킷을 통해 연결 • 리튬 배터리를 제어 모듈 내 USB에 납땜 • 모든 부품을 하우징 내부에 장착 • 기능 테스트 및 포장

III 판정 결과

《CBP의 판정》

-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가열 모듈과 제어 모듈은 장치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최종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다고 판단되며, 중국에서 수행되는 조립 공정은 해당 부품들을 새로운 상업적 제품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임

→ 제301조 적용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

Ⅳ 시사점

- ⊙ CBP는 가열식 액상 전자담배에 대해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 해당 액상을 가열하여 흡연자가 증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가열 장치를 핵심 구성요소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종제품의 원산지 또한 이러한 가열 장치의 원산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함

CBP의 참고 판정 사례

물품명	전자담배 카토마이저
사례번호	HQ H314961 (2021.04.22.)
쟁점사항	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사실관계	• [미국] - 전자액상 생산 후 대용량 용기에 담아 중국으로 수출 • [중국] - 히터, 히팅 홀더, 튜브, 커버 등 카토마이저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부품 생산 - 최종 조립 및 미국산 전자액상 충전
판정 결과	• 수입자는 미국산 전자액상이 중국에서 단순히 충전될 뿐,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으며, 동일한 화학적 조성과 물리적 특성을 유지하여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하지만, 전자액상은 가열되지 않으면 사실상 거의 사용 가치가 없으며, 중국산 가열 장치에 의해 열이 발생해야 사용자가 증기를 흡입할 수 있음 • 중국산 가열 장치는 최종제품에 본질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가열 장치의 조립, 기타 부품 생산, 최종 조립 등의 공정이 모두 중국에서 수행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유의사항: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원재료, 제조과정 등) 및 최종 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